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협동조합 실무매뉴얼

2021. 4.



Contents

○ I. 신청서 접수 및 필수 제출서류 보완

D-20. 조합원사의 조정협의 신청서 제출 확인	01
D-20. 필수 제출서류 확인 및 보완	04
D-20. 조정협의 기본요건 검토	07
D-20. 신청서 접수 및 중앙회 사전통지	11

○ II. 공급원가 변동요건 검토 및 전문가 지원요청

D-18. 공급원가 변동요건 검토	13
D-13. 원가 및 법률자문 지원요청	24

○ III. 조정협의 신청서 작성 및 발송

D-03. 조정협의 신청서 작성	26
D-day. 조정협의 신청서 발송	29
참고. 조정협의 향후 진행절차	31

○ 불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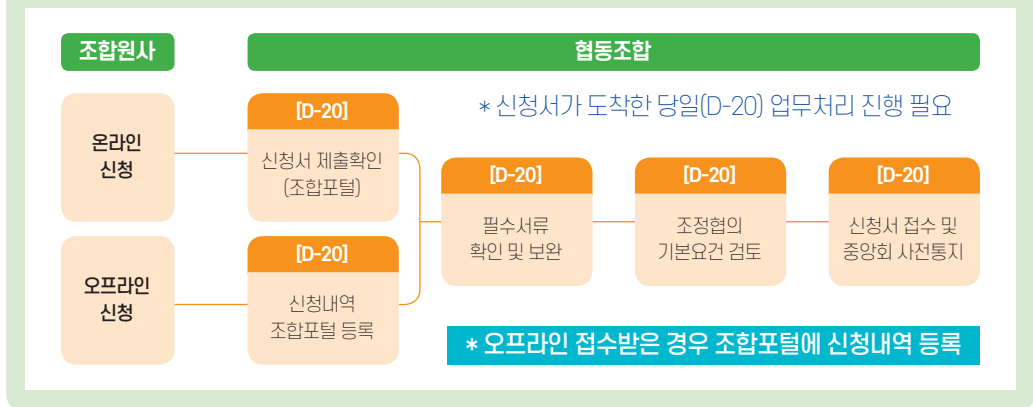
불임 1_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 양식(중앙회 발송용)	32
불임 2_ 상생협력법 및 시행령 관련조항	33

I

신청서 접수 및 필수 제출서류 보완

들어가기 앞서

[신청서 제출 확인 및 접수] 단계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조합원사가 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가급적 **조합포털에 신청내용 및 서류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D-20 조합원사의 조정협의 신청서 제출 확인

- ◆ **(온라인)** 조합원사가 조합포털을 통해 조정협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협동조합 담당자에게 문자, 이메일, 알림톡 등이 발송됩니다.
- ◆ **(오프라인)** 조합원사가 이메일·우편·직접방문 방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협동조합 담당자는 조합포털에 신청내용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1. 조합원사가 온라인으로 제출한 경우 → 조합포털 확인

- ① 조합원사가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를 온라인(중앙회 홈페이지)을 통해 제출한 경우 조합 담당자에게 이메일, 문자 및 알림톡 발송
- ② 조합포털 접속 후 [조합지원] 메뉴에서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선택하면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목록' 확인 가능

참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목록 화면(예시)

번호	조합명	신청일	신청기업	진행상황	지원요청	신청제출
1	OO협동조합	2021-04-21	OO기업	신청중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제출

③ [신청목록]의 [신청기업] 더블클릭 시 '신청서 상세정보' 화면 팝업

참고 신청서 상세정보 화면(예시)

신청서						
① 협동조합	상호	(자동생성)	담당자 성명	(자동생성)	담당자 연락처	(자동생성)
② 신청기업 (수탁기업)	상호	(자동생성)	사업자번호	(자동생성)	대표자 성명	(자동생성)
	담당자 성명	(자동생성)	휴대번호	(자동생성)	이메일	(자동생성)
	조합원사	해당(■)		해당되지 않음(□)		
위탁기업	상호	(자동생성)	사업자번호	(자동생성)	대표자 성명	(자동생성)
첨부파일	(조합원사가 첨부한 자료) 신청서, 원가내역서, 세금계산서					
전달사항	(조합원사가 기재한 내용) 진행사항 문자로 안내 요망					
신청기업과 위탁기업이 동일한 협동조합 가입여부					예 □	아니오 ■
동일사안으로 분쟁조정, 소송 등 진행 중인지 여부					예 □	아니오 ■

③ 협동조합 검토결과

검토결과	신청중 / 접수 / 보완요청 / 반려
검토내용	

- ① 자동생성 : 신청기업이 입력한 정보 자동생성
- ② 조합원사 : 신청기업이 소속 조합원사인지 확인하여 해당사항 체크
- ③ 협동조합 검토결과 : "신청중"으로 자동생성

2. 조합원사가 오프라인으로 제출한 경우 → 조합포털 등록

- ① 신청서 및 첨부자료 스캔 등 조합포털 등록 준비
- ② 온라인 등록을 위해 조합포털 접속 후 [조합지원] 메뉴에서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선택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목록' 확인

참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목록 화면(예시)

						신청서
번호	조합명	신청일	신청기업	진행상황	지원요청	신청제출
접수된 내용이 없습니다						

- ③ 신청목록 화면 상단의 [신청서]를 클릭하여 '신청서 접수화면'이 팝업되면 신청내역 입력 및 첨부파일을 등록 후 [저장] 클릭

참고 신청서 상세정보 화면(예시)

신청서						
① 협동조합	상호	조합명	담당자 성명	홍길동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0
② 신청기업 (수탁기업)	상호	OO제조(주)	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홍길동
	담당자 성명	작성자명	휴대번호	000-0000-0000	이메일	00@000.com
	조합원사	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위탁기업	상호	(주)OO금속	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김갑동
첨부파일	신청서, 원가내역서, 세금계산서					
전달사항	진행사항 문자로 안내 요망					
신청기업과 위탁기업이 동일한 협동조합 가입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일사안으로 분쟁조정, 소송 등 진행 중인지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③ 협동조합 검토결과

검토결과	신청중 / 접수 / 보완요청 / 반려
검토내용	

- ① 협동조합 : 로그인 정보로 자동생성.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는 수정 가능
- ② 신청기업 : 신청기업 정보 입력(조합원사 여부 확인 필수)
- ③ 위탁기업 : 위탁기업 정보 입력
- ④ 첨부파일 :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 일체
- ⑤ 전달사항 : 조정협의를에 필요한 전달사항 입력
- ⑥ 신청기업과 위탁기업이 동일 협동조합 가입여부 : 확인 및 체크
- ⑦ 동일사안으로 분쟁조정, 소송 등 진행 중인지 여부 : 확인 및 체크
- ⑧ 협동조합 검토결과 : "신청중"으로 자동생성

임시저장

저장

닫기

D-20 필수 제출서류 확인 및 보완

- ◆ 협동조합 담당자는 조합원사가 제출해야 할 필수 서류가 첨부되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 ◆ 서류가 미비한 경우, 조합원사에게 즉시 보완을 요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서류

①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예시

-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 조정협의 신청 전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② 수·위탁계약서 사본

- 조정협의 신청 전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계약서 등)를 포함

③ 경쟁입찰에 따라 수·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낙찰자확인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위탁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수·위탁계약서가 없는 경우(구두계약)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물품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하였다는 사실과 현재의 계약금액 확인 필수

증빙 서류

위탁기업이 제조 등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메일, 메시지 대화 내용이나 단가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또는 종래 납품대금을 지급한 통장거래내역과 납품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요청하여 보완

필수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 서류보완 요청

- 신청서와 제출서류에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기재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기업에게 즉시 서류보완 요청

- 신청서 반려

- 수탁기업이 상당한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을 하지 않아 조정협의 요건을 확인할 수 없거나, 20일 내에 서류검토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 신청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서 반려

서류보완 요청 및 반려 방법

① 조합포털 접속 후 [조합지원] 메뉴에서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선택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목록' 확인

참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목록 화면(예시)

번호	조합명	신청일	신청기업	진행상황	지원요청	신청제출
1	○○협동조합	2021-04-21	○○기업	신청중	<input type="button" value="신청"/>	<input type="button" value="제출"/>

② [신청목록]의 [신청기업] 더블클릭 시 '신청서 상세정보' 팝업

③ [협동조합 검토결과]에서 '보완요청' 또는 '반려'를 선택하고, 검토내용을 기재 후 [저장]클릭

- [저장] 클릭시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검토결과 알람톡, 메일 발송

- * [저장] 클릭시에만 알람톡, 메일 등 발송([임시저장]은 발송기능 없음)

참고 신청서 상세정보 화면(예시)

신청서						
협동조합	상호	조합명	담당자 성명	홍길동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0
신청기업 (수탁기업)	상호	00제조(주)	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홍길동
	담당자 성명	작성자명	휴대번호	000-0000-0000	이메일	00@000.com
	조합원사	해당(■)		해당되지 않음(□)		
위탁기업	상호	(주)00금속	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김갑동
첨부파일	신청서, 원가내역서, 세금계산서					
전달사항	진행사항 문자로 안내 요망					
신청기업과 위탁기업이 동일한 협동조합 가입여부					예 □	아니오 ■
동일사안으로 분쟁조정, 소송 등 진행 중인지 여부					예 □	아니오 ■

협동조합 검토결과

① 검토결과	신청중 / 접수 / 보완요청 / 반려
② 검토내용	(예시) 수·위탁계약서 누락 / 서류보완 요청 20일 경과 ...

- ① 검토결과 : '보완요청' 또는 '반려' 클릭
- ② 검토내용 : 검토결과 선택사유 및 요구사항 입력

임시저장

저장

닫기

◆ 온라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서류보완 요청 방법

- 보완이 필요한 세부사항 및 회신일자를 기재하여 조합원사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유선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 안내

● 신청서 반려 방법

- 조합원사에 유선전화를 통해 반려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고, 반려 사유를 기재한 공문 및 신청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송부

D-20 조정협의 기본요건 검토

- ◇ 조합원사가 조정협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협동조합은 20일 이내에 서류를 검토하고, 중앙회에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기본요건을 검토하여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 조정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기본요건 미충족, 불공정 행위 등) 관련 사실을 수탁기업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신청서를 반려해야 합니다.

기본요건 검토사항

- 조합원사의 조정협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아래의 기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고, 불충족 시 반려절차 진행

① 계약 내용이 '판매위탁'이 아닐 것(수·위탁거래일 것)

- 단순 판매를 위탁한 경우 수·위탁거래에 해당되지 않음

② 수탁기업이 신청일 현재 협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일 것

- 조합원사가 아닌 경우 중앙회(협동조합)를 통한 조정협의 진행 불가
- 이 경우 관련 사실을 수탁기업에게 통지하고, 조합 가입절차 등 안내

③ 위탁기업이 신청일 현재 동일 협동조합에 가입된 '조합원이 아닐 것'

- 수탁기업과 위탁기업이 동일 조합에 가입된 경우 조정협의 진행 불가

④ 위탁기업 규모가 '중기업' 이상일 것

- 주된 업종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일정수준 이하이면 소기업에 해당
[매뉴얼 8페이지 '업종별 소기업 규모' 참고]
-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중앙회(협동조합)를 통한 조정협의 불가

⑤ 동일 사안에 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했거나, 분쟁조정 협의회에서 조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을 것

- 신청서에 '분쟁조정 진행 중'으로 표시된 경우 조정협의 진행 불가
-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한 신고인 경우, 수탁기업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신청서 반려
[매뉴얼 10페이지 '불공정신고센터 현황' 참고]

참고 주된 업종별 소기업 규모기준(3년 평균 매출액)

평균매출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120억원 이하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수도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80억원 이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 제외)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50억원 이하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30억원 이하	부동산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10억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매출액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http://dart.fss.or.kr), [한국기업데이터 크레탑\(cretop.com\)](http://cretop.com) 등을 통해 확인 가능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남품대금조정센터 ☎ 02-2124-3207, 3209 | ✉ FAIRTRADE@kbiz.or.kr

기본요건 불충족하는 경우

- ① 조합포털 접속 후 [조합지원] 메뉴에서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선택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 목록' 확인

참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목록 화면(예시)

번호	조합명	신청일	신청기업	진행상황	지원요청	신청제출
1	○○협동조합	2021-04-21	○○기업	진행중	<input type="text" value="신청"/>	<input type="text" value="제출"/>

- ② [신청목록]의 [신청기업] 더블클릭 시 '신청서 상세정보' 팝업
- ③ [협동조합 검토결과]에 '반려' 선택 및 반려사유 기재 후 [저장]클릭
 - [저장] 클릭시 중소기업(수탁기업)에게 검토결과 알림톡, 메일 발송
 - * [저장]클릭시에만 알림톡, 메일 등 발송([임시저장]은 발송기능 없음)

참고 신청서 상세정보 화면(예시)

신청서						
협동조합	상호	조합명	담당자 성명	홍길동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0
신청기업 (수탁기업)	상호	OO제조(주)	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홍길동
	담당자 성명	작성자명	휴대번호	000-0000-0000	이메일	00@000.com
	조합원사	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위탁기업	상호	(주)OO금속	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김갑동
첨부파일	신청서, 원가내역서, 세금계산서					
전달사항	진행사항 문자로 안내 요망					
	신청기업과 위탁기업이 동일한 협동조합 가입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동일사안으로 분쟁조정, 소송 등 진행 중인지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협동조합 검토결과

① 검토결과	신청중 / 접수 / 보완요청 / 반려
② 검토내용	(예시) 판매위탁 / 불공정행위에 해당 ...

- ① 검토결과 : '반려' 클릭
- ② 검토내용 : 검토결과 선택사유 및 요구사항 입력

임시저장

저장

닫기

◇ 온라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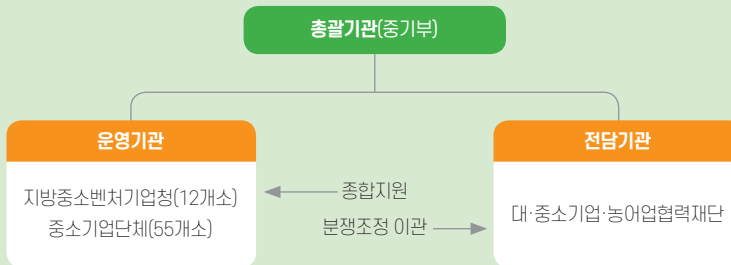
- 조합원사에 유선전화를 통해 반려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사유를 기재한 공문 및 신청서류 일체를 첨부하여 송부

참고 불공정거래신고센터 현황

■ 목적

-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한 중소기업 밀착형 신고 채널 구축을 위하여 전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업종별 사업자단체에 신고센터 설치·지원

■ 추진체계



-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관리하고 운영기관(중소기업단체·지방청)과 전담기관(협력재단) 구조로 운영
 - (운영기관) 중소기업단체에 배치된 담당자가 기본적인 상담 실시, 지방청과 변호사가 피해 현장을 방문하여 상담·조사
 - (전담기관) 법률상담, 사전자율분쟁조정, 신고센터 역량강화 등 담당

■ 주요내용

- (상담)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수탁기업) 대상 상담 및 제도 안내 지원
- (조사)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방청의 불공정 행위 조사를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 및 행정조치
- (사전자율조정) 수·위탁기업 간 분쟁사항에 대하여 협력재단의 전문 변호사 및 수·위탁분쟁 조정협의회를 통한 자율적 합의 유도

■ 수위탁 분쟁조정 신청 및 접수처(대·중소기업 협력재단)

- 우편 :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 32길29 키콕스벤처센터 9층
- 유선·메일 : 02-368-8470 / lhy@win-win.or.kr
- 홈페이지 : <https://www.smes.go.kr/poll/>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

D-20 신청서 접수 및 중앙회 사전통지

◆ 협동조합 담당자는 조합원사의 신청내용이 기본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아래를 참고하여 접수 및 중앙회 사전통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접수 및 중앙회 사전통지 방법

① 조합포털 접속 후 [조합지원] 메뉴에서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선택하여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목록' 확인

참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목록 화면(예시)

번호	조합명	신청일	신청기업	진행상황	지원요청	신청제출
1	○○협동조합	2021-04-21	○○기업	진행중	<input type="checkbox"/> 신청	<input type="checkbox"/> 제출

② [신청목록]의 [신청기업] 더블클릭 시 '신청서 접수화면' 팝업

③ [협동조합 검토결과]에서 '접수'를 선택하고 [저장] 클릭

- [저장] 클릭시 중앙회에 접수현황 사전통지 알림톡, 메일 발송

* [저장]클릭시에만 알림톡, 메일 등 발송([임시저장]은 발송기능 없음)

참고 협동조합 포털 신청서 접수화면 예시

신청서						
협동조합	상호	조합명	담당자 성명	홍길동	담당자 연락처	000-0000-0000
신청기업 (수탁기업)	상호	OO제조(주)	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홍길동
	담당자 성명	작성자명	휴대번호	000-0000-0000	이메일	00@000.com
	조합원사	해당(■)		해당되지 않음(□)		
위탁기업	상호	(주)OO금속	사업자번호	000-00-00000	대표자 성명	김갑동
첨부파일	신청서, 원가내역서, 세금계산서					
전달사항	진행사항 문자로 안내 요망					
신청기업과 위탁기업이 동일한 협동조합 가입여부					예 □	아니오 ■
동일사안으로 분쟁조정, 소송 등 진행 중인지 여부					예 □	아니오 ■

협동조합 검토결과

① 검토결과	신청중 / 접수 / 보완요청 / 반려
② 검토내용	(예시) 기본요건 충족으로 접수 결정

임시저장

저장

닫기

◆ 온라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①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 접수대장을 만들어서 등록 및 관리

참고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 접수대장(예시)

번호	신청일	신청기업	접수 및 반려			중앙회 신청서 제출일
			접수여부	일자	검토결과	
1	2021-04-21	OO기업	접수 / 반려	2021-04-21	기본요건 충족으로 접수 결정	2021-05-10

② 중앙회에 접수현황 사전통지

- 신청서 및 서류를 이메일로 송부하고, 유선전화로 관련 사항 통지

사전통지처 :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

☎ 02-2124-3207, 3209 ✉ FAIRTRADE@kbiz.or.kr

II

공급원가 변동요건 검토 및 전문가 지원요청

들어가기 앞서

[공급원가 변동요건 검토 및 전문가 지원요청] 단계는 아래와 같으며,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D-18] 공급원가 변동요건 검토

- ① 특정 재료비 비중 및 원재료 상승 요건
- ② 재료비 증가액, 계약금의 3% 이상 요건
- ③ 노무비 증가액, 계약금의 3% 이상 요건
- ④ 경비 증가액, 계약금의 3% 이상 요건
- ⑤ 노무비 비중 및 최저임금 상승률 요건

[D-13] 전문가 지원요청

신청요건 검토 관련
전문가(법률 및 원가)
자문 필요시
중앙회에 지원요청

D-18 공급원가 변동요건 검토

- ◆ 협동조합 담당자는 수탁기업(조합원사)의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상생협력법'에 따른 조정 협의 신청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신청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원가분석 및 법률자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24페이지 요청방법 참고]
- ◆ 『납품대금 조정협의 지원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공급원가 변동요건을 간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http://kbiz.webcost.co.kr>]

공급원가 변동요건 체크리스트

공급원가 변동요건		확인방법
①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해당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한 경우	14페이지 참조
②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16페이지 참조
③	임금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18페이지 참조
④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합니까?	20페이지 참조
⑤	'노무비 비중'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이고,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되었습니까?	22페이지 참조

1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해당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상승했습니까?

[특정 재료비]란 무엇인가요?

계약한 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특정한 원재료 가격과 투입량을 곱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의류 1,000벌 생산에 개당 가격이 2만원인 원단 100개가 들어간다면, '특정 재료비'는 2백만원(2만원 × 100개)입니다.

확인 방법

• 특정 재료비 비중(a) =

$$\frac{\text{특정 원재료 가격} \times \text{투입량}}{\text{계약금액}} \times 100$$

• 특정 원재료 가격 상승률(b) =

$$\frac{\text{변동된 원재료 가격} - \text{기존 가격}}{\text{기존 가격}} \times 100$$

- (a) ≥ 10% 이상이면서,
• (b) ≥ 10%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사례

- 의류제작업체인 A사는 B브랜드 의류 1,000벌에 대한 납품계약을 계약금액 1천만원에 체결하였고, 의류 1,000벌 제작을 위해서는 개당 가격이 2만원인 원단 100개가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text{특정 재료비 비중(a)} = 20\% = \frac{\text{특정 원재료 투입량(100개)} \times \text{가격(2만원)}}{\text{계약금액(1천만원)}} \times 100$$

- 계약기간 중 원단 가격이 2만원에서 2만5천원으로 상승하였습니다.

$$\text{특정 원재료 가격 상승률(b)} = 25\% = \frac{\text{변동된 원재료 가격(2만5천원)} - \text{기존 가격(2만원)}}{\text{기존 가격(2만원)}} \times 100$$

- 이 경우, 특정 재료비가 계약금액 1천만원의 20%에 해당하고, 해당 원재료 가격이 25% 상승하였으므로 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본 사례

시스템 자가검증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입력하세요

입력 순서	입력 내용
① 생산제품명을 입력하세요	의류
② 총 계약기간을 입력하세요	2021-02-02 ~ 2021-04-30
③ 계약 당시 계약금액을 입력하세요	10,000,000원
④ 원재료명과 특정 재료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단 / 2,000,000원
⑤ 현재 날짜 또는 가격변동 시점을 입력하세요	2021-03-31
⑥ 물가변동 이후 특정 재료비 금액을 입력하세요	2,500,000원
⑦ 결과 값을 확인하세요	[자동계산]

시스템 자가검증 입력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제품명	의류	1
총 계약기간 ②	2021-02-02 ~ 2021-04-30 (총 87일)	2

※ 납품대금 조정형의 요건확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제선택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택선택제 <input type="checkbox"/> 재료추가																																															
<table border="1"> <thead> <tr> <th>계약일</th> <th colspan="2">2021-02-02</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3 계약</td> <td>계약금액 ③</td> <td>10,000,000</td> </tr> <tr> <td>납품금액 ④</td> <td>금액을 입력해주세요.</td> </tr> <tr> <td>잔여금액 ⑤</td> <td>10,000,000</td> </tr> <tr> <td rowspan="2">4 비용</td> <td>원단</td> <td>2,000,000 20%</td> </tr> <tr> <td>재료비</td> <td>금액을 입력해주세요.</td> </tr> <tr> <td rowspan="2">노무비</td> <td>합계 ⑦</td> <td>2,000,000 20%</td> </tr> <tr> <td>최저임금 상승률 ⑧</td> <td>금액을 입력해주세요.</td> </tr> <tr> <td>경비 ⑨</td> <td>합계</td> <td>2.2%</td> </tr> </tbody> </table>	계약일	2021-02-02		3 계약	계약금액 ③	10,000,000	납품금액 ④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잔여금액 ⑤	10,000,000	4 비용	원단	2,000,000 20%	재료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노무비	합계 ⑦	2,000,000 20%	최저임금 상승률 ⑧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경비 ⑨	합계	2.2%	<table border="1"> <thead> <tr> <th>현재</th> <th colspan="2">2021-03-31</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5 계약</td> <td>계약금액</td> <td>10,000,000</td> </tr> <tr> <td>납품금액</td> <td>금액을 입력해주세요.</td> </tr> <tr> <td>잔여금액</td> <td>10,000,000</td> </tr> <tr> <td rowspan="2">6 비용</td> <td>원단</td> <td>2,500,000 25%</td> </tr> <tr> <td>재료비 합계</td> <td>2,500,000 25%</td> </tr> <tr> <td rowspan="2">노무비</td> <td>합계 ⑦</td> <td>2,500,000 25%</td> </tr> <tr> <td>최저임금 상승률 ⑧</td> <td>2.2%</td> </tr> <tr> <td>경비 ⑨</td> <td>합계</td> <td>X</td> </tr> </tbody> </table>	현재	2021-03-31		5 계약	계약금액	10,000,000	납품금액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잔여금액	10,000,000	6 비용	원단	2,500,000 25%	재료비 합계	2,500,000 25%	노무비	합계 ⑦	2,500,000 25%	최저임금 상승률 ⑧	2.2%	경비 ⑨	합계	X
계약일	2021-02-02																																														
3 계약	계약금액 ③	10,000,000																																													
	납품금액 ④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잔여금액 ⑤	10,000,000																																													
4 비용	원단	2,000,000 20%																																													
	재료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노무비	합계 ⑦	2,000,000 20%																																													
	최저임금 상승률 ⑧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경비 ⑨	합계	2.2%																																													
현재	2021-03-31																																														
5 계약	계약금액	10,000,000																																													
	납품금액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잔여금액	10,000,000																																													
6 비용	원단	2,500,000 25%																																													
	재료비 합계	2,500,000 25%																																													
노무비	합계 ⑦	2,500,000 25%																																													
	최저임금 상승률 ⑧	2.2%																																													
경비 ⑨	합계	X																																													

7 ※ 납품대금 조정형의 요건확인 결과

귀사는 납품대가 조정대상입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을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출력" 버튼을 클릭하셔서 본 결과지 출력 후, 납품대가 조정신청서 제출바랍니다.

※ 원단에(의) 소요되는 재료가 위락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 : O
 ※ 재료비 변동으로 앞으로 납품할 물품들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해당 : O
 ※ 노무비가 위락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 변동 : X
 ※ 노무비 변동으로 앞으로 납품할 물품들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해당 : X
 ※ 경비 변동으로 앞으로 납품할 물품들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해당 : X

2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재료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합니까?

[재료비 증가액]이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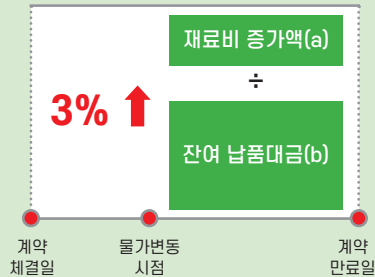
납품해야 할 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비의 인상 폭**을 의미하며, **변동된 재료비에서 기존 재료비를 차감한 금액**을 '재료비 증가액'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원재료 가격 변동으로 차량용 배터리 50개 제작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인상됐다면 '재료비 증가액'은 30만원(330만원 - 300만원)입니다.

확인방법

• **재료비 증가액(a) =**
변동된 재료비 - 기존 재료비

• **잔여 납품대금(b) =**
계약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frac{\text{재료비 증가액(a)}}{\text{잔여 납품대금(b)}} \times 100$
≥ 3% 이상이면 신청 가능



사례

• 차량용 배터리 제작업체인 A사는 자동차 제조업체인 B사와 차량용 배터리 100개를 납품하는 계약을 **계약금액 1천만원**에 체결한 이후 50개를 납품한 상황입니다.

• 그런데 원재료 가격의 인상으로, 앞으로 납품해야 할 배터리 50개 생산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재료비 증가액(a) = 30만원 = 변동된 재료비(330만원) - 기존 재료비(300만원)

• 한편, A사는 이미 50개 배터리를 납품하여 500만원을 지급받아 **잔여 납품대금이 500만원**인 상황입니다.

잔여 납품대금(b) = 500만원 = 계약금액(1천만원) - 이미 납품한 금액(5백만원)

• 이 경우 **재료비 증가액(30만원)**이 **잔여 납품대금 500만원의 6%**에 해당하므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frac{\text{재료비 증가액(30만원)}}{\text{잔여 납품대금(500만원)}} \times 100 = 6\%$ [3% 이상으로 신청 가능]

시스템을 통해 본 사례

시스템 자가검증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입력하세요

입력 순서	입력 내용
① 생산제품명을 입력하세요	차량용 배터리
② 총 계약기간을 입력하세요	2021-02-02 ~ 2021-04-30
③ 계약 당시 계약금액을 입력하세요	10,000,000원
④ 재료비 명칭과 금액을 입력하세요	배터리 재료 / 6,000,000원
⑤ 현재 날짜 또는 가격변동 시점을 입력하세요	2021-03-31
⑥ 납품금액(선지급금, 중도금 등)을 입력하세요	5,000,000원
⑦ 물가변동 이후 재료비 금액을 입력하세요	6,300,000원
⑧ 결과 값을 확인하세요	[자동계산]

시스템 자가검증 입력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제품명: 차량용 배터리 ①

총 계약기간 ②: 2021-02-02 ~ 2021-04-30 (총 87일)

※ 납품대금 조정협의 요건확인

전체선택 ✕ 선택삭제 + 재료추가

계약일 2021-02-02				⑤ 현재 2021-03-31			
③	계약금액	10,000,000		계약금액	10,000,000		
	납품금액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⑥ 납품금액	5,000,000		
	잔여금액	10,000,000		잔여금액	5,000,000		
④	비용	금액	비율	비용	금액	비율	중요율
	배터리 재료	6,000,000	60%	배터리 재료 ⑦	6,300,000	63%	5%
	재료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재료비 합계	6,300,000	63%	5%
노무비	합계	6,000,000	60%	노무비 합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최저임금 상승률		2.2%	최저임금 상승률			2.2%
경비	합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경비 합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8

※ 납품대금 조정협의 요건확인 결과

귀사는 납품단가 조정대상입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을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서 본 결과지 출력 후, 납품단가 조정신청시 제출바랍니다.

- ※ 배터리 재료에(의) 소요되는 재료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 X
- ※ 재료비 변동으로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해당: O
- ※ 노무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 변동: X
- ※ 노무비 변동으로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해당: X
- ※ 경비 변동으로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해당: X

3

임금 변동으로 인한 '노무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합니까?

[노무비 증가액]이란 무엇인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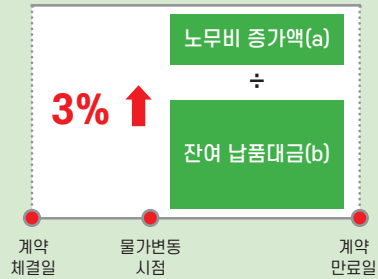
납품해야 할 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노무비의 인상 폭**을 의미하며, **변동된 노무비에서 기존 노무비를 차감한 금액**을 '노무비 증가액'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인상으로 프로그램 개발에 들어가는 노무비가 500만원에서 560만원으로 인상됐다면 '노무비 증가액'은 **60만원**(560만원 - 500만원)입니다.

확인방법

• **노무비 증가액(a) =**
변동된 노무비 - 기존 노무비

• **잔여 납품대금(b) =**
계약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frac{\text{노무비 증가액(a)}}{\text{잔여 납품대금(b)}} \times 100$
 $\geq 3\%$ 이상이면 신청 가능



사례

• 빌딩자동제어장치 개발업체 A사는 건설업체 B사와 '20년 6월부터 '21년 5월말까지 프로그램 개발 계약을 계약금액 5억원으로 체결했습니다.

• 이후 노사합의로 '21년 1월부터 지급될 해당 계약 관련 프로그램 개발 노무비가 5천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1천만원 증가했습니다.

노무비 증가액(a) = 1천만원 = 변동된 노무비(6천만원) - 기존 노무비(5천만원)

• 한편, A사는 '20년 12월말까지 선지급금 및 중도금으로 3억원을 지급받아서 잔여 납품대금이 2억원인 상황입니다.

잔여 납품대금(b) = 2억원 = 계약금액(5억원) - 이미 수령한 금액(3억원)

• 이 경우 노무비 증가액(1천만원)이 잔여 납품대금 2억원의 5%에 해당하므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frac{\text{노무비 증가액(1천만원)}}{\text{잔여 납품대금(2억원)}} \times 100 = 5\%$ [3% 이상으로 신청 가능]

시스템을 통해 본 사례

시스템 자가검증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입력하세요

입력 순서	입력 내용
① 생산제품명을 입력하세요	프로그램 개발
② 총 계약기간을 입력하세요	2020-06-01 ~ 2021-05-31
③ 계약 당시 계약금액을 입력하세요	500,000,000원
④ 노무비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100,000,000원
⑤ 현재 날짜 또는 가격변동 시점을 입력하세요	2021-01-01
⑥ 납품금액(선지급금, 중도금 등)을 입력하세요	300,000,000원
⑦ 물가변동 이후 노무비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110,000,000원
⑧ 결과 값을 확인하세요	[자동계산]

시스템 자가검증 입력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제품명 프로그램 개발 ①

총 계약기간 2020-06-01 ~ 2021-05-31 (총 364일) ②

※ 납품대금 조정협의 요건확인

계약일 2020-06-01

현재 2021-01-01

구분	구분	금액	비율	구분	금액	비율	구분	비율	구분	비율
계약	계약금액	500,000,000		계약금액	500,000,000					
	납품금액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납품금액	300,000,000					
	잔여금액	500,000,000		잔여금액	200,000,000					
비용	재료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재료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노무비	합계		노무비	재료비 합계					
	합계	100,000,000	20%	합계	110,000,000	22%	30%		X	
경비	취지요금 상승률	2.9%	경비	취지요금 상승률	1.5%					
합계	합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합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X

※ 납품대금 조정협의 요건확인 결과

⑧ 귀사가 입력한 사항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대상으로 파악됩니다.

협통조합의 조합원은 협통조합을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 버튼을 클릭하셔서 본 결과지 출력 후, 납품단가 조정신청서 제출바랍니다.

※ 재료비 변동으로 앞으로 납품할 물품들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해당 : X
 ※ 노무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요금 상승률 이상 변동 : X
 ※ 노무비 변동으로 앞으로 납품할 물품들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해당 : O
 ※ 경비 변동으로 앞으로 납품할 물품들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해당 : X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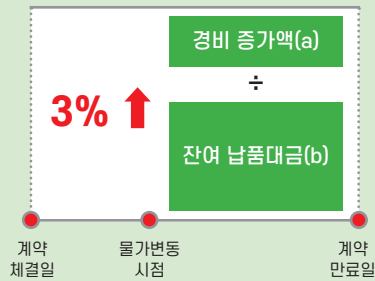
물가변동으로 인한 '경비 증가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을 차지합니까?

[경비 증가액]이란 무엇인가요?

납품해야 할 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경비의 인상 폭**을 의미하며, **변동된 경비에서 기존 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경비 증가액'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온라인 조사 용역 계약 진행 중에 유선전화 조사가 추가 되어 경비가 6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증가했다면 '경비 증가액'은 400만원(1,000만원 - 600만원)입니다.

확인방법

- **경비 증가액(a) =**
변동된 경비 - 기존 경비
 - **잔여 납품대금(b) =**
계약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frac{\text{경비 증가액(a)}}{\text{잔여 납품대금(b)}} \times 100$$
- ≥ 3% 이상이면 신청 가능



사례

- 리서치 조사업체인 A사는 B 방송사와 '온라인 리서치 용역계약'을 1억원에 체결하였는데, 과업 내용에 유선전화 조사가 추가되었습니다.
- 이와 관련 유선전화 조사를 위해 A사는 유선 통신장치 렌탈비용 및 사무공간 임대료를 추가로 지급하게 되어 경비가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총 4백만원 증가했습니다.
경비 증가액(a) = 4백만원 = 변동된 경비(1천만원) - 기존 경비(6백만원)
- 한편 A사는 B사로부터 선지급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받아 잔여 납품대금이 8천만원인 상황입니다.
잔여 납품대금(b) = 8천만원 = 계약금액(1억원) - 이미 수령한 금액(2천만원)
- 이 경우 경비 증가액(4백만원)이 잔여 납품대금 8천만원의 5%에 해당하므로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frac{\text{경비 증가액(4백만원)}}{\text{잔여 납품대금(8천만원)}} \times 100 = 5\% \text{ [3\% 이상으로 신청 가능]}$$

시스템을 통해 본 사례

시스템 자가검증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입력하세요

입력 순서	입력 내용
① 생산제품명을 입력하세요	온라인 리서치
② 총 계약기간을 입력하세요	2021-02-02 ~ 2021-04-30
③ 계약 당시 계약금액을 입력하세요	100,000,000원
④ 경비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6,000,000원
⑤ 현재 날짜 또는 가격변동 시점을 입력하세요	2021-03-31
⑥ 납품금액(선지급금, 중도금 등)을 입력하세요	20,000,000원
⑦ 물가변동 이후 경비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10,000,000원
⑧ 결과 값을 확인하세요	[자동계산]

시스템 자가검증 입력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제품명 ①

총 계약기간 ② ~ (총 87일) ②

※ 납품대금 조정협의 요건확인

전체선택 선택삭제 재료추가

계약일		2021-02-02	⑤ 현재	2021-03-31	+공시노임
③ 계약	계약금액	100,000,000		100,000,000	
	납품금액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⑥	20,000,000	
	잔여금액	100,000,000		80,000,000	
비율	비율				
	비율				
재료비	재료비를 입력해주세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X
	재료비를 입력해주세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노무비	합계				X
	합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X
경비	최저임금 상승률	2.2%		2.2%	
	④	합계	6,000,000	⑦	10,000,000

8 ※ 납품대금 조정협의 요건확인 결과

귀사는 납품대가 조정대상입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협동조합을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력" 버튼을 클릭하여서 본 결과를 출력 후, 납품대가 조정신청시 제출바랍니다.

- ※ 재료비 변동으로 앞으로 납품할 물품들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해당: X
- ※ 노무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 변동: X
- ※ 노무비 변동으로 앞으로 납품할 물품들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해당: X
- ※ 경비 변동으로 앞으로 납품할 물품들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해당: O

5

‘노무비 비중’이 계약금액의 10%이상이고,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변동되었습니까?

[노무비 비중]이란 무엇인가요?

계약한 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노무비를 계약금액으로 나눈 퍼센트(%) 값을 의미합니다. 예를들어 홈 페이지 제작 계약을 5천만원에 체결하였는데, 이중 노무비가 2천만원이 들어간다면 ‘노무비 비중’은 40%입니다. [(2천만원÷5천만원)×100] = 40%

확인 방법

• 노무비 비중(a) = $\frac{\text{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노무비}}{\text{계약금액}} \times 100$

• 변동된 최저임금 상승률(b) ≥ 최근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c)
<연도별 최저임금액 고시>

적용년도	시간급	인상률	고시일
'21.1.1~'21.12.31	8,720원	1.5%(b)	'20.8.7
'20.1.1~'20.12.31	8,590원	2.9%	'19.8.5
'19.1.1~'19.12.31	8,350원	10.9%	'18.8.3

※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 [(1.5%)+(2.9%)+(10.9%)]/3 = 5.1%(c)

• (a) ≥ 10% 이상이면서, (b) ≥ (c) 이상인 경우 신청가능

사례

• 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인 A사는 컨설팅업체 B사의 홈페이지 제작을 의뢰 받아 '20년 7월부터 '21년 6월말까지 5천만원(이중 노무비 2천만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노무비 비중(a) = 40% = $\frac{\text{물품 생산에 들어가는 노무비(2천만원)}}{\text{계약금액(5천만원)}} \times 100$

• '21년도 최저임금이 1.5% 인상으로 고시되어('20.8),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5.1%)보다 낮은 상황입니다.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 5.1% = $\frac{'21년(1.5\%)+'20년(2.9\%)+'19년(10.9\%)}{3}$

• 이 경우 노무비 비중은 10%를 넘지만, '21년도 최저임금 상승률(1.5%)이 3년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5.1%)보다 낮기 때문에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시스템을 통해 본 사례

시스템 자가검증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입력하세요

입력 순서	입력 내용
① 생산제품명을 입력하세요	홈페이지 제작
② 총 계약기간을 입력하세요	2020-07-01 ~ 2021-06-30
③ 계약 당시 계약금액을 입력하세요	50,000,000원
④ 노무비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20,000,000원
⑤ 현재 날짜 또는 가격변동 시점을 입력하세요	2021-01-04
⑥ 물가변동 이후 노무비의 합계를 입력하세요	20,000,000원
⑦ 결과 값을 확인하세요	[자동계산]

시스템 자가검증 입력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생산제품명	홈페이지 제작	①
총 계약기간	2020-07-01 ~ 2021-06-30 (총 364일)	②

※ 납품대금 조정협의 요건확인

전체선택
 선택삭제
 +재료추가

계약일 2020-07-01			⑤ 현재 2021-01-01			+공시노무		
③	계약금액	50,000,000	계약금액	50,000,000				
	납품금액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납품금액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잔여금액	50,000,000	잔여금액	50,000,000				
재료비	재료비	금액	비율					
	재료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합계							X
노무비	합계	20,000,000	40%	⑥ 노무비 합계	20,000,000	40%	0%	X
	최저임금 상승률		2.9%	최저임금 상승률			2.2%	
	경비	합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경비 합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X

※ 납품대금 조정협의 요건확인 결과

⑦ 귀 사가 입력한 사항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파악됩니다.

- ※ 재료비 변동으로 앞으로 납품할 물품들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해당 : X
- ※ 노무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이상 변동 : X
- ※ 노무비 변동으로 앞으로 납품할 물품들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해당 : X
- ※ 경비 변동으로 앞으로 납품할 물품들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 상승으로 납품대금 조정 대상에 해당 : X

D-13 원가 및 법률자문 지원요청

- ◆ 협동조합 담당자는 조합원사의 신청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가분석 및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 중앙회에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조합원사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7일 이내에 중앙회에 신청해야하며, 신청이 늦어질 경우 원활한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원가분석 전문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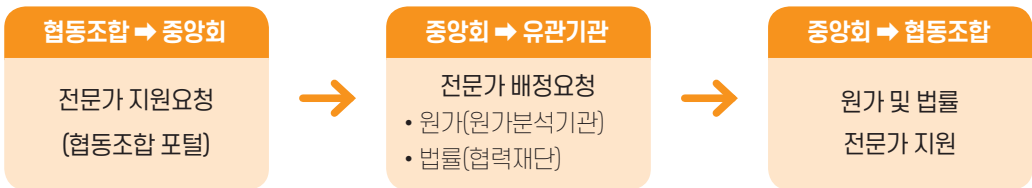
- 내용 : 수탁기업의 조정협 의 신청서에 기재된 물가변동 현황 및 계약금 조정이 필요한 범위 등 자문

· 법률자문 전문가 지원(대·중소기업 협력재단 협업)

- 지원내용 : 수·위탁계약 해당여부, 서류상 기재된 사항의 적정성 등

자문 비용 : 무료(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 무료 지원)

진행 절차



요청방법

① 협동조합 포털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목록]에서 '지원요청' 클릭

참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목록 화면(예시)

번호	조합명	신청일	신청기업	진행상황	지원요청	신청제출
1	○○협동조합	2021-04-21	○○기업	접수	신청	제출

② [원가 및 법률자문 요청] 화면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항목 체크

참고 원가 및 법률자문 요청 화면 예시

지원요청 ¹⁾	법률자문	수·위탁계약 해당여부, 서류상 기재된 사항의 적정성 등	신청(■)
	원가분석	조정협의 신청서에 기재된 물가변동 현황, 계약금 조정이 필요한 범위 등	신청(■)

주1) 지원요청 항목에서 지원 분야(법률, 원가) 신청 클릭

임시저장

신청

닫기

③ [신청] 클릭시 중앙회에 지원요청 현황 알림톡, 메일 발송

* [신청]클릭시에만 알림톡, 메일 등 발송([임시저장]은 발송기능 없음)

※ 전문가 지원요청을 완료한 경우 중앙회는 협동조합에 전문가 배정 결과를 이메일을 통해 안내

문의 사항 : 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로 연락(☎ 02-2124-3207, 3209)

- 전문가 자문 진행 과정에서 문의 및 애로사항 발생하는 경우 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로 연락하여 관련 내용 상담 진행

◆ 온라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지원받고자 하는 분야(법률자문, 원가분석)를 기재한 공문을 중앙회에 이메일로 발송하고, 유선전화로 관련 사항 통지
- 원활한 지원을 위해 조합원사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요

사전통지처 :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

☎ 02-2124-3207, 3209

✉ FAIRTRADE@kbiz.or.kr

Ⅲ

조정협의 신청서 작성 및 발송

들어가기 앞서

[조정협의 신청서 작성 및 발송] 단계는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신청서 제출 전 필수 제출서류 첨부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3] 신청서 작성

- 협동조합, 위탁기업 현황 및 연락처
- 계약사항 및 신청요건
- 원재료 변동현황 등 기재

[D-2] 필수서류 확인

- 조합원사의 신청서
- 공급원가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계약서 사본 등

[D-day] 신청서 발송

- 온라인 신청서 발송 (조합포털 활용)
- 오프라인 발송 (이메일, 우편 등 활용)

D-03 조정협의 신청서 작성

- ◆ 중앙회에 발송하는 조정협의 신청서에는 조합원사로부터 제출받은 신청서의 내용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 ◆ 서류검토 과정에서 당초 조합원사가 신청한 내용이 변동되었을 경우 관련 사항을 표시하고, 변경된 사유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협동조합 및 위탁기업 현황 기재

- 사업자등록증 상의 상호·대표자 성명·사업자번호·업종, 송달 가능한 주소 및 연락처를 기재

2 계약 일반사항 기재

- 제품명은 조합원사가 위탁기업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 등을 의미
- 수·위탁계약서상 계약기간과 계약금액, 납품수량을 기재
- 조합원사가 계약금액 중 일부를 지급받은 상황이라면 그 금액을 기재하고, 이미 납품한 물품이 있는 경우 해당 수량을 표시

3 확인사항 체크

- 신청기업과 위탁기업이 동일한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는지 여부를 체크
 - 동일한 사안으로 공정위·중기부 등에 신고했거나, 분쟁조정 절차 등이 진행 중인지 여부를 체크
- ※ 신청기업과 위탁기업이 **같은 협동조합에 가입**돼 있거나, **동일한 사안으로 신고, 분쟁조정 등이 진행 중**이라면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요건 체크

- 조합원사가 조정협의를 신청한 공급원가 변동 요건을 체크
- 신청요건 ⑥의 경우, 2021년도 최저임금 인상률(1.5%)이 3년 평균(5.1%)보다 낮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미적용

5 원재료 등 변동 현황

- 원재료 등 변동 사항을 체크하고, 세부내역을 기재
- 조합원사가 신청한 내용 및 전문가 자문 내용 등을 토대로 특정 원재료비 등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상승률을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자료(원가내역서 등) 표시

6 조정 요청금액

- 조정 요청금액(조정률)은 아래 방법을 통해서 도출가능
 - 조정률 : 특정 원재료 투입비중 × 특정 원재료 가격상승률
 - 조정액 : 잔여 납품대금 × 조정률

7 기타 요청사항

- 중소기업중앙회가 참고하여야 할 내용 등을 기재
- 필요한 경우 별지에 관련 내용을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도 가능

납품대금조정협의를신청서 작성예시(중앙회 발송용)

조합원사 (신청기업)	상 호	00협동조합		대표자	홍길동	
	주 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000로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기재)	H.P		(담당자 연락처 기재)	
	F A X	(사무실 팩스번호 기재)	E-MAIL		(담당자 이메일 기재)	
위탁기업	상 호	(주)00금속		대표자	김갑동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로				
	업 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사업자번호	000-00-00000		
	전화번호	(사무실 전화번호 기재)	FAX	(사무실 팩스번호 기재)		
계 약 일반사항	계약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납품수량	
	철근가공	2020.9.6 ~2021.9.5	전체금액 10억원	既수량금액 5억원	전체수량 1,000개	既납품수량 500개
확인사항 (해당사항 ✓체크)	■ 신청기업과 위탁기업이 동일한 협동조합 가입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협동조합 가입					
	■ 동일한 사안으로 공정위·중기부 등에 신고, 또는 분쟁조정 진행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불공정행위 신고 <input type="checkbox"/> 분쟁조정 진행 <input type="checkbox"/> 민사소송 진행					
신청요건 (①~⑤ 중 해당사항 ✓체크)	<input checked="" type="checkbox"/> 특정 원재료비 비중이 10% 이상이고, 원재료 가격 상승률 10% 이상					
	② 재료비 변동금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③ 노무비 변동금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④ 경비 변동금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⑤ 노무비 비중이 10% 이상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3년 평균 이상					
원재료 등 변동 현황 (①~③ 중 해당사항 ✓체크)	구 분	원재료 품 명 ¹⁾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 격 상승률	증빙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재료비	철 근	30%	15%	원가내역서, 세금계산서 첨부했습니다.	
	② 노무비		%	%		
	③ 경 비		%	%		
주1) 가격이 변동된 원재료의 품명 기재(경비의 경우 전기료 등 세부 내역 기재)						
조 정 요청금액	잔여 납품대금 (5억원)에서 (4.5%) 인상된 금액으로 조정 요청 * 전문가 분석, 조합원사 협의 결과 조정률을 당초 3%에서 4.5%로 조정					
기 타 요청사항	철근 가격이 15%나 인상되어 이대로 납품하게 되면 적자를 피하지 못합니다. 계약금액에서 철근이 30%를 차지하고, 가격도 15% 올랐기 때문에 잔여대금을 4.5%(30%*15%) 인상했으면 합니다.(2천2백50만원) 위탁기업이 협의에 잘 응한다면 3%로 조정률을 변경할 의향도 있습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원이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합니다.						
2021. 4. 21. 신청인 홍길동 (인)						
<h3 style="margin: 0;">중소기업중앙회 귀중</h3>						
첨부서류	1. 수탁기업(조합원사)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 2.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과 관련한 공급원가 변동 확인서류 사본 (필수) 3. 수·위탁 계약서 사본 (필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5. 원가분석 및 법률자문 전문가 의견서 (자문을 받은 경우) 6. 경쟁입찰 관련 서류(필요시) 7. 기타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참고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D-day 조정협의 신청서 발송

- ◆ 협동조합 담당자는 중앙회에 조정협의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필수 제출자료가 누락 없이 첨부돼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 조정협의 신청서는 가급적 조합포털을 통해 중앙회로 제출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우편] [직접방문] [우편발송]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 제출자료 확인

- ① 협동조합이 중앙회로 조정협의를 의뢰하는 신청서
- ② 수탁기업(조합원사)으로부터 접수받은 조정협의 신청서
- ③ 공급원가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예시

- 계약금액에서 특정 재료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등
- 조정협의 신청 전 원재료를 구매한 경우 구매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
-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④ 수·위탁계약서 사본

- 조정협의 신청 전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관련 서류(변경계약서 등)
- 계약서가 없는 경우 위탁기업이 제조 등을 지시하였다고 볼 수 있는 이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단가계약서, 견적서, 발주서 등

⑤ 경쟁입찰에 따라 수·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공고, 낙찰자확인서 등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⑥ 중앙회로부터 원가분석 및 법률자문 지원을 받은 경우 전문가 의견서

신청서 제출 방법

- ① 협동조합 포털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목록]에서 '지원요청' 클릭
- ② 협동조합 포털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목록]에서 '신청제출' 클릭

참고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목록 화면(예시)

번호	조합명	신청일	신청기업	진행상황	지원요청	신청제출
1	○○협동조합	2021-04-21	○○기업	접수	신청	제출

- ③ [신청서 제출화면]에서 필수 제출서류 첨부 및 '제출' 클릭
* [제출]클릭시에만 알림톡, 메일 등 발송([임시저장]은 발송기능 없음)

참고 중소기업중앙회 신청서 제출화면 (예시)

<p>「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2조의2에 따라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합니다.</p>		
첨부서류	필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중앙회 발송용 신청서 2. 신청기업(조합원사)이 제출한 서류 일체 3. (자문을 받은 경우)전문가 의견서
	선택사항	기타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참고할 수 있는 서류 등

20

중소기업중앙회 귀중

임시저장

제출

닫기

◆ 온라인 진행이 어려운 경우

- 전자우편 : 중앙회 담당자에게 이메일 발송
- 직접방문 : 직접 방문 및 제출
- 우편발송 : 중앙회 주소지로 발송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

주소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30 중소기업중앙회 3층 납품대금조정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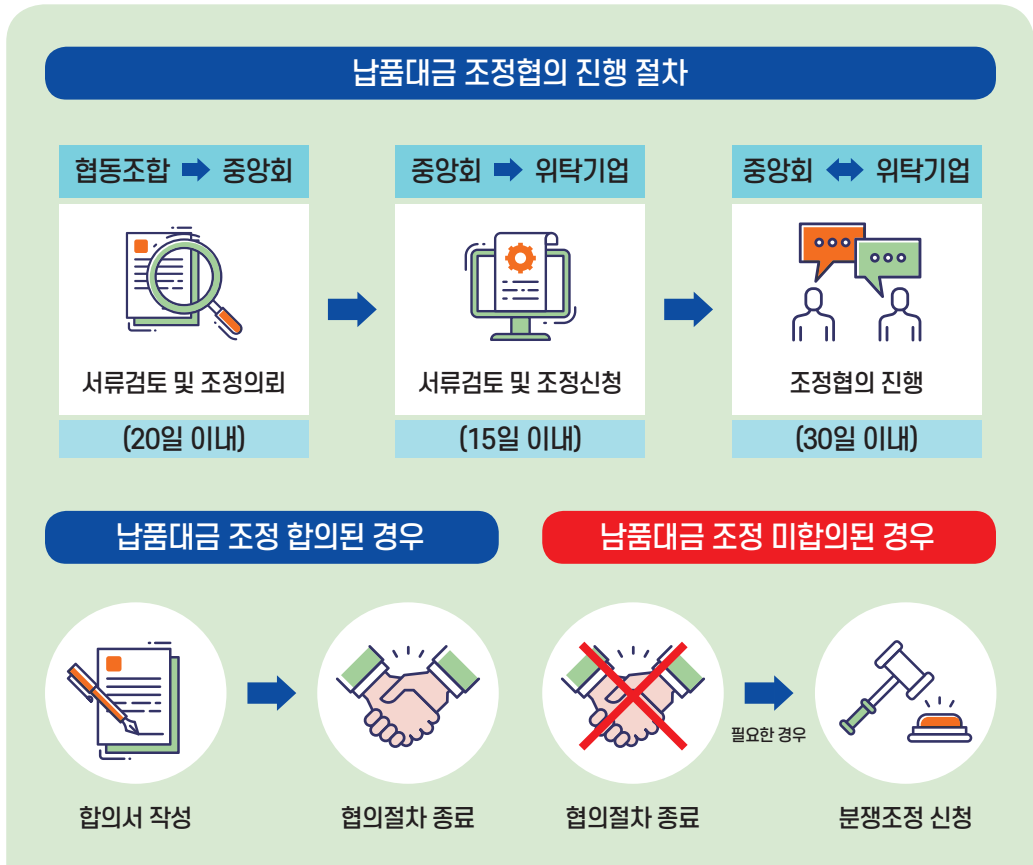
☎ 02-2124-3207, 3209

✉ FAIRTRADE@kbiz.or.kr

참고 조정협의 향후 진행절차

◆ 협동조합이 중앙회로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하면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향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향후 진행절차



Tip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후, 어느 단계까지 진행 됐는지 궁금하신가요?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조합의 신청 건이 현재 어느 단계를 진행 중인지 안내해 드립니다.

문의 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센터

☎ 02-2124-3207, 3209 | ✉ FAIRTRADE@kbiz.or.kr

붙임 1 납품대금 조정협의 신청서 양식

* 신청서 양식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조정협의신청서 (중앙회 발송용)					
중소기업 협동조합	조 합 명			이사장	
	주 소				
	전화번호			H.P	
	F A X			E-MAIL	
위탁기업	상 호			대표자	
	주 소				
	업 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FAX	
계 약 일반사항	계약내용	계약기간	계약금액		납품수량
			전체금액	既定금액	전체수량
확인사항 (해당사항 ✓체크)	<input type="checkbox"/> 신청기업과 위탁기업이 동일한 협동조합 가입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협동조합 가입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사안으로 공정위·중기부 등에 신고, 또는 분쟁조정 진행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input type="checkbox"/> 불공정행위 신고 <input type="checkbox"/> 분쟁조정 진행 <input type="checkbox"/> 민사소송 진행				
신청요건 (①~⑤ 중 해당사항 ✓체크)	① 특정 원재료비 비중이 10% 이상이고, 원재료 가격 상승률 10% 이상				
	② 재료비 변동금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③ 노무비 변동금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④ 경비 변동금액이 잔여 납품대금의 3% 이상				
	⑤ 노무비 비중이 10% 이상이고, 최저임금 인상률이 최근 3년 평균 이상				
원재료 등 변동 현황 (①~③ 중 해당사항 ✓체크)	구 분	원재료 품 명 ¹⁾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가 격 상승률	증빙자료
	① 재료비		%	%	원가내역서, 견적서, 급여지급내역서, 카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② 노무비		%	%	
	③ 경 비		%	%	
주1) 가격이 변동된 원재료의 품명 기재(경비의 경우 전기료 등 세부 내역 기재)					
조 정 요청금액	잔여 납품대금 (원)에서 (%) 인상된 금액으로 조정 요청				
기 타 요청사항					
<p>「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 . . .</p> <p style="text-align: right;">이사장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중소기업중앙회 귀중</p>					
첨부서류	1. 수탁기업(조합원사)의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서 2. 납품대금조정협의 신청과 관련한 공급원가 변동 확인서류 사본 (필수) 3. 수·위탁 계약서 사본 (필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5. 원가분석 및 법률자문 전문가 의견서 (자문을 받은 경우) 6. 경쟁입찰 관련 서류(필요시) 7. 기타 납품대금조정협의를 참고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붙임 2 상생협력법 및 시행령 관련조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① 수탁기업은 물품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후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변동되어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물품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납품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업(「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청을 받아 위탁기업과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같은 조합의 조합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위탁기업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조합원인 수탁기업의 신청을 받은 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3(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① 법 제22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공급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서 수탁기업이 물품등을 제조·공사·가공·수리·용역·기술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②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변동비율의 기준이 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의 기준일은 수탁·위탁계약을 체결한 날(수탁·위탁계약 체결 후에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직전 조정할 날을 말하고,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찰한 날을 말한다)로 한다.

1. 특정 원재료에 소요되는 재료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그 원재료 가격이 변동된 경우: 10퍼센트
2.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3. 노무비가 위탁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 다만, 최근 3년간의 평균 최저임금 상승률이 7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7퍼센트로 한다.
4. 임금 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

부터 20일 이내에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을 하여야 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위탁기업에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이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고,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를 완료된 경우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사정변경이 없으면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을 할 수 없으며, 수탁기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납품 중단을 결의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부당하게 기업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수탁기업의 신청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위탁기업은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정을 신청한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납품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센트

5. 공공요금, 운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및 이에 준하는 비용 상승에 따라 경비가 변동된 경우: 앞으로 납품할 물품등에 해당하는 납품대금의 3퍼센트

③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위탁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④ 법 제22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을 하는 수탁기업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이상으로 공급원가가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수탁·위탁계약서 사본(계약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
3. 경쟁입찰에 따라 수탁·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그 밖에 위탁기업과의 납품대금 조정에 필요한 서류

⑤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중소기업협

⑧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를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8조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에게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위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납품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 개시 후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중앙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⑥ 법 제22조의2제3항 본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탁기업에게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하려면 신청서에 제4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탁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⑦ 법 제22조의2제8항제3호에서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법 제22조의2제3항의 신청에 따른 조정협의를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2. 위탁기업 및 수탁기업이 제시한 조정금액이 상호 간에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3. 합의가 지연되면 영업활동이 심각하게 곤란하게 되는 등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에게 중대한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